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4. 19 선고 2023가단2891 판결 [손해배상(기)및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3. 15.

판 결 선 고 2024. 4. 19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주장 및 판단

원고는 피고의 부당해임 및 특허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2억 원 상당(미지급 급여 1,400만 원, 영업수수료 3,300만 원, 업체 미지급액 1,800만 원 외 금형제작비 5,500만 원, 기대수익 최소 금액 8,000만 원)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변지영